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2. 7. ~ 2. 16.)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16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13건

상 임 위 원 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3. 2. 16.)
의회운영 위원회 (1)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이기찬 의원	수정가결
기획행정 위원회 (5)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길수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수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	최승순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최승순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임미선 의원	수정가결
사회문화 위원회 (2)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기호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원미희 의원	수정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2)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균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최종수 의원	원안가결
경제산업 위원회 (1)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기철 의원	원안가결
안전건설 위원회 (1)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최규만 의원	원안가결
교육 위원회 (1)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최규만 의원	원안가결

《참고 : 조례 제정 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16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3. 2. 16.(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공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 요구 조례안의 확정)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조례의 효력 발생)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1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

■ 대표발의 : 이기찬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양구)

■ 공동발의 : 권혁열 의원(의장 · 국민의힘 · 강릉4),

김기홍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원주3),

심영곤 의원(의회운영위원장 · 국민의힘 · 삼척2)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위촉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예의장의 활동을 통해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에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하고자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이란 강원도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② 강원도의회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③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도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강원도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및 현물판매 지원 · 도의회 의정 홍보 활동 등 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④ 명예의장의 위촉 ·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명예의장선정위원회를 둔다.



이기찬 의원



권혁열 의원



김기홍 의원



심영곤 의원

■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김길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1)



강원도행정동우회를 육성 · 지원함으로써 강원도 지방행정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강원도지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행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강원도지사는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강원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강원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김길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1)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에서 각 시상부문 명칭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부문별 수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하고자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친절봉사부문, 근검부문, 효행부문, 애향부문이 각각 봉사부문, 나눔부문, 가족사랑부문, 고향사랑부문으로 개정되었다.

▣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최승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5)



강원도 내 일제 잔재에 대한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제 잔재에 대한 실태조사·연구사업, 일제 잔재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발의 : 최승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708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강원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착오·오기·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강원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각각 조례안 입법 예고 전, 행정계획안 수립·변경 전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 의뢰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도보나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강원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임미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강원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을 말한다. ②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③ 도지사는 강원도의회 의결을 얻은 공공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 그 집행 결과를 출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강원도의회에 정산보고해야 한다. ④ 정산보고에는 출연금 사업명, 출연금 사업 내용, 출연대상 기관 개요, 출연금 집행 내역, 출연금 집행 잔액의 발생 사유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엄기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서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내용이 드러나도록 조례 제명을 “강원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금연구역의 범위에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주유소가 추가되었다. 또한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다.

■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원미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 공동발의 : 정재웅 의원(사회문화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김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2),
문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태백2),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가족돌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 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하고, 이러한 계획들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 · 정서 지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 · 체육활동 지원,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 · 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③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원미희 의원



정재웅 의원



김시성 의원



문관현 의원



엄윤순 의원

■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 공동발의 : 권혁열 의원(의정 · 국민의힘 · 강릉4),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3),
심오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2), 최승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5)

강원도 내 무역항 중 일부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 · 항만하역기업 ·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재정적 지원을 육계항을 비롯하여 나머지 무역항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강원도 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우리도에 위치한 항만을 말한다.



박호균 의원



권혁열 의원



김용래 의원



심오섭 의원



최승순 의원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고성),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엄운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농업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드론영농 촉진, 농업용 드론 보급 확산 지원,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③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최종수 의원



김용복 의원



강정호 의원



박호균 의원



엄운순 의원



윤길로 의원



전찬성 의원



홍성기 의원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발의 : 김기철 의원(경제통상위원회 · 국민의힘 · 정선)



강원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강원도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등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에게 상담, 자문, 교육, 환경개선, 공동사용시설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체계적인 공유경제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공유경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최규만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2)



지진재해로부터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주민·방재 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고, ②의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최규만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2)



지진재해로부터 강원도 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정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